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제작자명(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최초 제작자	상호(법인명)	(※수입자만 해당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제작구분	[] 국내 제작·조립자 [] 수입자	
자동차부품명(생산자)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항·제3항 및 제40조의6제4항에 따라

- [] 위와 같이 부품제작자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부품제작자등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등록	1.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계획에 관한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 확보내역(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포함합니다)에 관한 서류 3. 부품자기인증과 관련된 기술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변경	1. 법인 명칭 및 주소의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2. 대표자 성명의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3.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변경(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증빙하는 서류	
	재발급	1.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국토교통부 (부품제작자등 등록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부품제작자등 등록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부품제작자등 등록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부품제작자등 등록 관련부서)